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및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대하여는 상속에 포함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의 유증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문의 경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세정 13407-878, 2000. 7. 8)

2. 토지·건물 및 보유차량의 지방세부과 타당성 여부

- 의료보험연합회는 구 의료보험법 제27조에 의거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 공법인으로서 법률 제5854호로 '99.2.8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험연합회는 해산되고(법 부칙 제6조), 해산과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함)으로 설립되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진료비)를 심사하는 전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의 진료비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법상 규정되어 있음(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이에 종전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을 심사평가원으로 승계받음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다툼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 의】

- 구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되고 해산과 동시에 심사평가원으로 설립되어 종전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을 승계받음에 있어 토지·건물 및 보유차량에 대한 등록명의를 변경이 수반되는 바,
- 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에 따라 포괄승계된 토지·건물 및 업무용 차량이